

#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.

※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-30호(2022.1.17.)는 본 고시로 대체함

2022년 2월 5일

경 상 남



1. 기 간 : 2022. 2. 7.(월) 0시 ~ 2022. 2. 20.(일) 24시

2. 효 력 : 2022. 2. 7.(월) 0시부터

- 1)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2.21.(월) 05시까지 적용
- 2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예외 연령은 2022.3.1.(화)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~11세 이하로 적용하며, 계도기간 1개월 부여(‘22.4.1.부터 과태료 부과)
- 3)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는 3주(2.7.~2.25.)간 계도기간 적용

3. 주요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

가. 적용대상

<b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(11종)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</li> <li>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</li> <li>▲ 식당·카페 ▲ 멀티방 ▲ PC방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</li> </ul>
<b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(19종)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</li> <li>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이·미용업</li> </ul>



구분	주요 방역수칙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적용 제외 &gt;</b></p> <p>❶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</p> <p>❷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봄종사자를 의미)</p> <p>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</p> <p>❹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</p> <p>❺ 실외체육시설에서 '스포츠 경기 진행'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- 이 경우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(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</p> <p>❻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험 등) 가능</p> <p>▶ (식당·카페에서는) 6명까지 모임 가능  - 단,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(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)</p>
기타 행사·모임	<p>▶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 까지 가능</p> <p>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299명 까지 가능</p> <p>* (접종완료자 등) ① 접종 완료자, ②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이내), ③ 18세 이하, ④ 완치자 ⑤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</p>
<b>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</b>	
<p>유흥시설 5종,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클럽·나이트) 콜라텍·무도장</p>	<p>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 ※ 21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</p> <p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※ 수기명부 운영 금지  ※ 허가(신고) 받은 업종 불문, 사실상 유흥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</p>
노래(코인)연습장 (뮤비방)	<p>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 ※ 21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p> <p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 ※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(예:뮤비방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 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p>
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, 경륜·경정·경마장	<p>▶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, 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  ※ 21시 또는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p>

구분	주요 방역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</li> <li>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li> <li>(단 카지노, 경륜·경정·경마장은 수기명부 운영 금지)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식당·카페 (홀덤펍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</li> <li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1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li> <li>* (식당·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)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PC방, 멀티방 (홀덤펍게임장)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파티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*</li> <li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li> <li>- (마사지업소·안마소) 「의료법」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또는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실내스포츠경기 (관람)장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li> </ul> </li> </ul>
<b>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미적용 시설</b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오락실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 ※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li> <li>▶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
구분	주요 방역수칙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▶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</li> </ul>
실외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/ul>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4㎡당 1명</li> <li>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</li> <li>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</li> </ul> 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    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* 단,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, 별도 지정 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</li> </ul>
국제회의·학술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</li> <li>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</li> </ul> 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    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/ul>
결혼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</li> <li>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</li> <li>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300명 미만</li> <li>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적용 가능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    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/ul>
돌잔치, 장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·행사 기준 적용</li> <li>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</li> <li>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300명 미만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</li> <li>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
구분	주요 방역수칙
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 ※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li> <li>- (학원)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</li> <li>▶ (밀집도) 2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↳ '22.2.7~25일까지 계도기간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*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</li> </ul>
독서실, 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▶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어 앉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↳ '22.2.7~25일까지 계도기간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</li> <li>* 별도 섭취 공간(독서실·스터디카페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</li> </ul>
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</li> <li>*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</li> </ul>
백화점, 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영화관·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*</li> <li>※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li> <li>- (영화관·공연장)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</li> <li>▶ (밀집도)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</li> <li>*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(대학 부속시설 등 「공연법」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)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*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</li> </ul>
<b>③ 기타시설</b>	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▶ (밀집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%, 최대 299명 이내 ※ 단, <u>접종완료자로만*</u> 구성 시 수용인원 70% 까지</li> <li>* PCR음성자,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</li> <li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▶ (기타)</li> </ul>

구분	주요 방역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소 모 임) 사적모임(6명) 이내,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</li> <li>- (종교행사) 행사 일반 수칙 적용, <u>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</u>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</li> <li>* 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</li> </ul> </li> <li>- (기 타)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,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</li> </ul>
<b>콜센터·물류센터</b>	▶ <b>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</b>

\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\*\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#### 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
-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, 시행규칙 제42조

5.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#### 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

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또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2)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### 8.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시설명	담당부서(도)	연락처	비 고
▶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 ▶ 단란주점 ▶ 헌팅포차 ▶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, 돌잔치	식품의약과	211-5024	
▶ 콜라텍	예방안전과	211-5414	
▶ 노래연습장 ▶ PC방 ▶ 오락실·멀티방 ▶ 영화관	문화예술과	211-4534	
▶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과	211-3354	
▶ 공연장	문화예술과	211-4544	
▶ 놀이공원, 워터파크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실내체육시설, 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)	체육지원과	211-4744	
▶ 결혼식장	가족지원과	211-5256	
▶ 장례식장	노인복지과	211-4873	
▶ 목욕업 ▶ 이·미용업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학원 ▶ 독서실 ▶ 스터디카페	통합교육추진단	211-3665	
▶ 마트·백화점 ▶ 백화점·대형마트	소상공인정책과	211-3434	
▶ 직업훈련기관	각 소관부서	-	
▶ 종교시설	문화예술과	211-4514	
▶ 노인요양시설	노인복지과	211-4875	
▶ 요양병원	식품의약과	211-5044	

▶ 정신병원	보건행정과	211-4935	
▶ 콜센터	노동정책과	211-3464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관광진흥법상)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공중위생법상)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어촌체험마을(민박)	섬어촌발전과	211-6173	
▶ 농어촌민박	농업정책과	211-6255	
▶ 농촌체험휴양마을	농업정책과	211-6254	

끝.